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1호의2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지 방 공 소 청

(00-0000-0000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: ○ ○ 지방법원장 발 신 : ○○지방공소청

제 목: **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** 검 사 (서명 또는 인)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.

아동학대 행위자	성 명			
	주민등록번호	-	(세)	
	직 업		피해아동등과의 관계	
	주 거			
	보 조 인			
피해아동	성 명			
	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아동학대 전담공무원			
	변 호 사			
피해아동 보호명령의 내용	[]	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(房室)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		
	[]	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		
	[]	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		
	[]	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		
	[]	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		
	[]	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,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·치료위탁		
	[]	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		
	[]	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		
	[]	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		
	[]	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		
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필요한 사유		별지와 같음		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	판 사 (서명 또는 인)		